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. 2. 15 선고 2021가단1266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아람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21.

판 결 선 고 2022. 2. 15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전북 고창군 D 대 489㎡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. 11. 20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C은 2017. 11. 20. 피고로부터 7,000,000원을 받고 유일한 재산인 전북 고창군 D 대 489㎡ 중 상속분인 9분의 2 지분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다(갑 제5, 7호증, 2021. 8. 9. 및 2021. 12. 3. 회신). C은 위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원금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(갑 제1, 2, 3호증).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이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), C의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C과 형제로서 C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, 이 사건 분할협이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판사 허윤범